

사 하 구 공 인 조 례 증 개 정 조 례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0. 13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0. 18

다. 상 정 일 자 : 제87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위원회(10. 28) 상정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이중근 민원봉사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동 조례 중 사무관리 규정을 따라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사무관리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
-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하여 “전자공인”의 규정을 신설
- 동 주무제 시행 및 FAX민원 처리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 정비(동의 공인 관수자 조정, 중계민원 전용공인 폐지)

나. 주요내용

- 구, 동간 중계민원 전용공인 폐지(안 제2조 제4항)
- 전자공인 등록규정 신설(안 제2조 제7장 및 제8항)
- 공인의 관수자 조정(안 제13조)
- 공인 날인 대신 행정기관장의 서명 조항 신설과 공인 인영의 인쇄규정 신설(안 제15조 제3항 및 제4항)
- 사무관리규정에 맞게 관련 서식 정비
(안 제4조, 제6조, 제7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)
- 구청장 직인의 크기 조정(안 제4조, 제2항의 “별표4”)

3. 관련법령

-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및 제36조, 제41조
- 부산광역시 사하구공인조례 제2조 및 제3조, 제4조, 제9조, 제10조, 제13조, 제15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는 무인민원 발급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, 동 조례 중 사무관리규정을 따라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사무 관리규정에 맞게 개정하고
-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운용에 대비한 전자공인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